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36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 05. 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08. 28.

REFLOW

REFLOW

(리플로우)

정 보 공 개 서

『(주)포스베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포스베리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72(지축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336-883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504-035-5983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 02-336-883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포스베리	리플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72(지축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8. 12. 13.	2018. 12. 18.	박정설	02-336-8834	0504-035-5983
	법인등록번호	110111-6955037	사업자등록번호	477-87-0133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박정설	리플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72(지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설	02-336-8834	0504-035-5983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내이사	배민호	리플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72(지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설	02-336-8834	0504-035-5983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REFLOW(리플로우)』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REFLOW(리플로우)	

REFLOW

상 호	REFLOW(리플로우) ○○(지역명)점	REFLOW 리플로우
상 표	REFLOW	상표 출원준비 중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490,345	1,331,474	158,871	2,503,725	72,316	65,562
2022년	1,721,375	1,510,900	210,474	3,770,566	87,248	51,603
2023년	2,153,530	2,731,650	-578,120	2,497,166	-716,032	-788,595

* 당사의 재무상황은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현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정설	대표이사	2018.12.~현재	(주)포스베리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배민호	사내이사	2018.12.~현재	(주)포스베리 사내이사	영업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FLOW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등록만료일
리플로우	상표	출원준비 중	출원준비 중	출원준비 중	-
이미지	REFLOW				

* 당사의 상기 상표는 현재 출원준비 중이므로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2.08.18.(직영점 영업개시일 : 2019.06.07.)

2. 『REFLOW(리플로우)』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포스베리	리플로우	박정설	2022.08.18.~2023.11.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124, 8층 811호(덕은동, 드림코어)
(주)포스베리	리플로우	박정설	2023.11.29.~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72(지축동)

3. 『REFLOW(리플로우)』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리플로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빵류, 음료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REFLOW(리플로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	2	3	1	2	4	2	2
서울	1	-	1	1	-	1	2	1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1	-	1	2	1	1	2	1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세종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REFLOW

5. 최근 3년간 『REFLOW(리플로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해당사항 없음					
2022	0	1	0	0	0	1
2023	1	1	0	0	0	2

*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4]를 확인하십시오.

6. 『REFLOW(리플로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REFLOW(리플로우)』외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비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3.3m²당	상한	면적3.3m²당	하한	면적3.3m²당	
전체	2	1,007,454	9,836	1,138,909	11,635	876,000	8,189	2곳 산정
서울	1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경기	1	해당없음	-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

REFLOW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 상기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REFLOW(리플로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 『REFLOW(리플로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	344일(0.94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 당사는 2023년 말에 『REFLOW(리플로우)』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판촉 비용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e-비즈니스 사업단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02-2002-5036

- * 귀하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본부** 예치계좌에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 귀하가 『REFLOW(리플로우)』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주)포스베리	예치대상(보험가입으로 대체 가능)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예치대상(보험가입으로 대체 가능)	확정금액
기타 비용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가맹금

- *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맹계약과 동시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전 교육비	[5,500]	가맹점개설 및 운영과 영업활동에 관한 교육비	가맹계약과 동시	교육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11,000]				

2) 계약이행보증금

- * 귀하가 『(주)포스베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주)포스베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없음)

REFLOW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계]	[2,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	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3,000]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개점전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4) 기타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 및 [별첨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82.5 m² 기준)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 m ² 당 금액	반환여부 및 조건	비고
총액	-	[96,250]	-	-	-
인테리어 시공	미지정	[63,250]	[2,530]	공사 전 계약취소	천정, 벽체(목공사, 금속공사), 바닥(타일 등), 설비, 전기, 조명, 도장, 주방 가구, 필름 공사 등
간판 및 사인물		[5,500]	[220]	공사 전 계약취소	기본 LED 채널 1개 기준, 내외부 사인물 포함(디자인에 따라 금액 변동), 전면 어닝, 돌출 간판 별도
도면/실사비	(주)포스베리	[2,200]	-	공사 전 계약취소	가맹본부의 도면제공 및 시라에 대한 비용
초도물품비	[별첨 2] 참조	[3,300]	[132]	공급 전 계약취소	[별첨 2] 참조
기기설비/의탁자	[별첨 3] 참조	[22,000]	[880]	설치 전 계약취소	[별첨 3] 참조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시 3.3m ² 당 금 삼십삼만원(₩ 33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함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초도물품비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 상기 비용은 매장의 크기,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음향시설, 소방설비, 전기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아닐 것
피 고 용 인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 『REFLOW(리플로우)』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특별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주)포스 베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 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 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보수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 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 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광고비	전체광고 시 총광고비 용 중 가맹본부부담액 50%제외 금액(단, 상품 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 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에는 가맹본부부담 75%) - 각 가맹점사업 자간에는 균등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 / 사전 약정서 작성시 개별 동의 불요
판촉비	1)공동판촉 시 기획비용 은 본사부담, 제작비용 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2)개별판촉시 가맹점사 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 / 사전 약정서 작성시 개별 동의 불요
로열티	월 순매출의 2.2% (부가세 포함)		매월 25일	반환될 수 없음	영업표지 사용 및 가맹점 관리에 소요되는 소멸성	-

REFLOW

					비용	
자연 이자	연 20%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	본사에 지급할 비용을 연체했을 경우 부담
점포 환경 개선비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 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REFLOW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거나, 양수한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조치사항

-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체 수단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대체수단의 교체로 인하여 가맹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REFLOW(리플로우)』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REFLOW(리플로우)』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 귀하가 운영하는 『REFLOW(리플로우)』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내 용	금 액	
[합 계]	[13,000]	
가 맹 비	[5,500]	부가세포함

REFLOW

개점 전 교육비	[5,500]	
계약 이행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REFLOW(리플로우)』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주)포스베리』의 상호 . 간판 .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주)포스베리』가 대여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주)포스베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주)포스베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을 계산하여 지연일 당 금 십만원을 지연이자로 『(주)포스베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 귀하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주)포스베리』가 대여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주)포스베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형/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주)포스베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의 물품에는 전산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 * 귀하가 계약 종료 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봉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해 당사에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반품 신청한 물품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실사 결과 물품의 오·훼손, 유통기한 도과, 유통기한 임박 등 반품을 인정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반품에 대해 귀하와 당사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귀하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될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REFLOW(리플로우)』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귀하가 『REFLOW(리플로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REFLOW(리플로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2) 당사가 『REFLOW(리플로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커피, 베이커리	당사에서 지정한 상품 이외의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의 매장 크기에 따라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상품은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당사가 개발한 신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 ·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음료 등을 함께 판매하는 제빵점업	리플로우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버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복합쇼핑몰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복합쇼핑몰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 공항, 호텔, 지하상가, 철도관련 역사, 버스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종합병원, 테마파크, 키즈카페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 홍대앞 상권, 서울 명동 상권, 서울 건대 상권, 대구 동성로 상권, 부산 서면 상권 등 사회통념상 변화가 상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특수상권으로 인정되는 상권에 입점한 매장 - 상권의 범위 및 영업지역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5.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나 고가도로로 구분되어 동일 상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하철 출구가 달라 상권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및 신도시 계획으로 상권이 조만간 변경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상권의 구분이나 변경이 예상되는 상권에 입점한 매장 - 상권의 범위 및 영업지역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고객 모집을 하기위한 판촉·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REFLOW(리플로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REFLOW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7.2%	42.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REFLOW(리플로우)』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를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점포환경개선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본사의 승인 없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물품 대금의 결제를 지연하여 본사로부터 최고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대금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의 표준화 및 상품, 제품 등의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상 규정된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가맹계약서 상의 감독, 통제 및 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설비 및 기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사로부터 시정 조치 요구를 받고도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가맹본부에게 대여 받은 설비, 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계약서상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국단위 광고 및/또는 판촉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광고 및/또는 단독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본문

REFLOW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2호
○ 가맹계약서 상 자점매입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3호
○ 납부할 각종 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본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4호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양도 등을 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5호
○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6호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가맹점의 일부를 변경하여 점포 내 점포(shop-in-shop) 형태 또는 점포 분할의 형태(한 호실을 가벽,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나누는 행위)로 별개의 매장을 만들어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거나 점포를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본인의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3자로 하여금 동종 또는 이종 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7호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8호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336-8834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상

REFLOW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속인에 대해서는 개점 전 교육비를 제외한 가맹금 면제
대리행사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
업무위탁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REFLOW(리플로우)』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 음료 등을 함께 판매하는 제빵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

- * **귀하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REFLOW(리플로우)』와 동종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주 7일 / 매월 30일 이상 영업 / 오전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 / 정기휴일을 정할 경우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REFLOW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점포의 청결	담당자 가맹점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필요 시	문의: 02-336-8834
서비스의 표준화	담당자 가맹점 방문→매뉴얼 준수 체크→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친절도 검사	담당자 가맹점 방문→접객 매뉴얼 준수 여부점검→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광고 계획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각 가맹점사업자 균등 부담)	공고→가맹점 부담액 통보→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75%	광고비 25% (각 가맹점사업자 균등 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행사	상품판촉	기획비용	판촉물부수 내지 개수 별로 제작비용 부담	판촉 계획 공고→가 맹점 부담액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광고활동 내지 판촉활동 금지
	팜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가맹점사업자 부담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 스 등	판촉	기획비용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을 균분하여 부담	가맹점 부담액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 완납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 귀하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 *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가맹비 및 개점전 교육비 합산액(해당 가맹금을 특약을 통해 적용 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가맹비 및 개점전 교육비 합산액(해당 가맹금을 특약을 통해 적용 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가맹비 및 개점전 교육비 합산액(해당 가맹금을 특약을 통해 적용 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의 50%
 4. 가맹점 개점 이후-가맹계약 잔여 개월 수(계약이 종료된 달을 포함한다)X가맹비 및 개점전 교육 합산액(해당 가맹금을 특약을 통해 적용 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됨)의 5%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 요 비 용
합 계	-	6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52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4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D-44	
종업원구인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D-44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	
교육 실시	- 출퇴근 집체교육	D-43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8	
지역홍보	- 지역 판촉 행사 실시	D-15 ~ 개점전날	
개 점	-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 02-336-8834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매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REFLOW(리플로우)』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개점 전 교육	1. 상품 조리 및 점포운영 시스템 교육 2. 고객서비스 방법 교육	출·퇴근 집체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필요 시	
보수 교육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종업원 관리 교육, 상품 조리 교육, 신메뉴 교육, 점포 운영 교육 등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2인기준)	비 고
개점 전 교육	7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개별 산정	실비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 교육	협의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REFLOW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연남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8 1층
2	경기	북한산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7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4개월	1,215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 부가세 제외)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719,17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포스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점의 주방설비/ 기기/ 의탁자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REFLOW

[별첨 4.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5.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점사업자 현황

No	매 장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